

圖書館法施行令과 圖書館振興法施行令 條文 對比表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|
| ◎도서관법시행령 | ◎도서관진흥법시행령 |
| 제 1조(목적)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 1조(목적) 이 영은 도서관진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제 2조(특수도서관의 이용자) 도서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2조제 7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”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,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·근무 또는 복역중인 자 기타 특수환경에 처한 자를 말한다. | 제 2조(특수도서관의 이용자) 법 제 2조제 7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”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,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·근무 또는 복역중인 자 기타 특수환경에 처한 자를 말한다. |
| 제 3조(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) 법 제 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| 제 3조(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) 법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제 4조(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) 법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·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(사서)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| 제 4조(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) 법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·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(사서)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제 5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) ①법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.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 (신설) | 제 5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) ①법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.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 |
| 제 6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작의 기준과 범위)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| 제 6조(시체) 문화부장관이 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직원·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(사서)(이하 “사서직원등”이라 한다)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체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1. 사서직원등의 연수 2.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|
| 제 7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작의 기준과 범위)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| 제 7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작의 기준과 범위)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-|
| <p>1.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·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. 자료 이용자의 편의 3.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<u>(신설)</u> ②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이용가치의 상실 2.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.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(제 2항제 3호의 규 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) 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<u>3퍼센트이내로</u> 하되,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<u>제 7조</u>(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 9조의 규 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 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<u>문교부차관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국립중 앙도서관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경제기획원·내무부·재무부·<u>문교부</u>·체신부·<u>문화공보부</u>·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있 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 2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3.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교수 기타 도서관업무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<u>문교부</u> <u>장관이</u> 위촉하는 사람</p> <p>③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.</p> <p><u>제 8조</u>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합하 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| <p>1.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·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. 자료 이용자의 편의 3.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<u>4.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</u>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이용가치의 상실 2.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. 천재·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의 망실 ③자료(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 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)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<u>100분의 3이내로</u> 하되,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<u>100분의 50을</u> 초과 할 수 없다.</p> <p><u>제 8조</u>(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 9조의 규 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 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<u>문화부차관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국립중 앙도서관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경제기획원·내무부·재무부·<u>교육부</u>·<u>문화부</u>·보 전사회부·체신부·총무처 및 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도서관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 2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3.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기타 도서관 및 출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<u>문화부장관이</u> 위촉하는 사람</p> <p>③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<u>제 9조</u>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합하 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|
| <p>제9조(위원회의 직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체계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·총괄에 관한 사항(3항대비)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(2항대비)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10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1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문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.</p> <p>제12조(도서관진흥기금사무의 위임등) ①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중 특정도서관 또는 특정 지역 도서관진흥을 조건으로 한 기부금을 제원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의 교육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에 위임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교육위원회는 매회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서관의 설립·시설 및 운영의 보조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(신설)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<p>②문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.</p> | <p>제10조(위원회의 직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(이하 "협력망"이라 한다)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·총괄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2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문화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임명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제1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서관의 설립, 시설·자료의 확충 및 운영의 보조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<p>②문화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|
| <p>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.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</p> 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<u>문교부장관은</u>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연도의 사업계획·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.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<p>제15조(기금의 회계기관등) ①<u>문교부장관</u>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<u>교육위원회</u>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문교부장관 및 교육위원회는</u>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.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</p> 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<u>문화부장관은</u>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연도의 사업계획·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.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<p>제15조(기금의 회계기관등) ①<u>문화부장관</u>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<u>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</u>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문화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</u>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)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3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내외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.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3. 국가서지·남본속보·종합목록 기타 필요한 서지의 발간·배포 4.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도의 수립·시행 5. 국내외 회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6.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|
| <p>제16조(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)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<u>법 제16조제 1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·교류 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7조(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·지원) 국립중앙도서관은 <u>제16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·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.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 및 대차 (신설) 3. 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4. 사회교육활동 및 국민독서운동 5. 자료의 국제교류 6.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(신설) | <p>제17조(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)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<u>법 제16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, 교류 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8조(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·지원) 국립중앙도서관은 <u>법 제16조제 1항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·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. 자료의 선정·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 및 대차 3. 국민독서운동의 지도·지원 4. 지역별·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. 자료의 국제교류 7.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<p>제19조(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) 법 제16조제 1항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령별·직업별·계층별 독서운동 2.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 활동 3. 장애인등을 위한 독서활동 4.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5. 문화시설·교육시설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-|
| <p>제18조(사서직원의 연수등)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<u>②</u>사서직원의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한다.</p> <p><u>③</u>사서직원의 연수대상·연수과정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<u>④</u>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직원의 연수를 다른 도서관이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제20조(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)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직원(사서직원등과 도서관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<u>②</u>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, 일반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직원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③</u>각 도서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④</u>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·연수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u>⑤</u>제 1항 내지 제 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타 도서관직원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p> |
| <p>제19조(제공 및 납본자료등) ①법 제17조제 1항·제 2항 및 제31조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"라 함은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지 도</p> <p>2. 음반·비디오 자료</p> <p>3. 슬라이드</p> <p>4.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</p> <p>5.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</p> <p>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을 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1조(제공 및 납본자료등) ①법 제17조제 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"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지도</p> <p>(삭제)</p> <p>2. 슬라이드</p> <p>3.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</p> <p>4.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</p> <p>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법 제1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|
| <p>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(삭제)</p> |
| <p>제20조 (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) ①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“자료번호”라 한다)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.</p> <p>②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한다.</p> <p>④ 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(이하 “한국문헌번호”라 한다)의 부여대상·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p> <p>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법 제4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7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납본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하여 국가서지 또는 추천자료서지에의 수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제22조 (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) ①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“자료번호”라 한다)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.</p> <p>②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에 출판사의 연혁·출판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④ 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(이하 “한국문헌번호”라 한다)의 부여대상·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p> <p>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문헌번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-|
| <p>제21조 (한국문현번호운영심의회) ① 한국문현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현번호운영심의회 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p> | <p>제23조 (한국문현번호운영심의회) ① 한국문현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현번호운영심의회 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행정기관 소속공무원, 도서관계 및 출판계 인사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p> |
| <p>제22조 (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<u>법 제23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공립공공도서관 단위로 설치되어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도서관장과 봉사대상구역내의 교육계·문화계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설립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| <p>제24조 (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<u>법 제24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내의 문화계·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3조 (운영위원회의 직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.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3.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</p> | <p>제25조 (운영위원회의 직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.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.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.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.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.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|
| <p>제24조 (운영위원회 회의등)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<u>제10조의 규정을</u> 준용한다.</p> | <p>제26조 (운영위원회 회의등) <u>제11조의 규정은</u>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 |
| <p>제25조 (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) <u>법 제24조 및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</u> 의하여 <u>설립등록을</u>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·군 교육장(서울특별시·직할시의 교육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7조 (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) <u>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</u> 의하여 <u>도서관설립등록을</u>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|
| (신설) | <p>제28조(청문의 절차) ①법 제25조제 3항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 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제 1항의 통지를 받은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|
| 제26조(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) 법 제28조제 1항(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관할 시·군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제29조(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) 법 제27조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제27조(공공도서관의 사용료)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| 제30조(공공도서관의 사용료)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|
| 1. 입관료 2.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3. 개인연구실·회의실등 이용수수료 4. 자료복사료 | (삭제) 1.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. 개인연구실·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3. 자료 복사료 4. 장기간 강습·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5. 입관료(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) |
| (신설) | 제31조(협력망등의 구성) ①협력망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. |
| (신설) | |
| 제28조(도서관정보협력망의 조직)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정보협력망(이하 “협력망”이라 한다)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. |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-|
| <p>②법 제4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(서울 특별시·직할시의 구에 한한다)의 공공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,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29조(협력망운영계획) ①중앙관의 장은 법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·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| <p>②법 제4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·군 및 구(자치구에 한한다)의 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,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32조(협력망운영계획)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의 장은 법 제39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·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중앙관의 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·분석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의 장이 보고할 때에는 지역대표관과 협력망에 참가하는 각종 도서관은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요구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(과태료의 부과) ①법 제47조제 1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교부장관·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(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관할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관할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(신설)</p> |
| | <p>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이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문화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문화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34조(권한의 위임등) 문화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-|
| | <p>1. 기금중 특정도서관 또는 특정지역 도서관의 진흥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·운용</p> <p>2. 법 제25조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·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</p> <p>3. 법 제26조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·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</p> <p>4. 법 제27조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의 수리</p> <p>5. 법 제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</p> <p>6. 법 제4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p> |
| 부 칙 | 부 칙 |
|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<u>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 다만, 제2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<u>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납본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</u></p> <p>(신설)</p> <p>제3조(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도서관으로서 법 제3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관할 시·군 교육장에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<u>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<u>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.</u> 다만,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.</p> <p>제3조(국·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) 법 부칙 제 4조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”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.</p> <p>(삭제)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|---|
| (신설) | <p><u>제 4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</u> <u>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·부칙</u> <u>제5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</u> <u>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하여</u> <u>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</u> <u>다.</u> <u>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5</u> <u>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요건</u> <u>을 갖춘 사람 또는 동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</u> <u>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</u> <u>는 사람으로서 동 부칙 제5조제4항 또는 동부칙</u> <u>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</u> <u>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문화</u> <u>부장관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(신설) | <p><u>제 5조(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</u> <u>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교육부</u> <u>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문</u> <u>화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본다.</u></p> |
| <p><u>제 4조(도서관의 시설·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</u> <u>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</u> <u>직원·사서교사 및 실기교사(사서)의 배치기준에 미</u> <u>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</u> <u>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 5조(정사서·준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</u></p> <p>①이 영 시행당시 사서직원의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p> <p>②이 영 시행당시 사서직원의 자격증 또는 상급 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별표 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.</p> | <p><u>제 6조(도서관의 시설·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삭제)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|
| <p>③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 되고,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p> <p>④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(제 3항의 경우에는 4년)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교부장관이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부칙 제 6조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|
| <p>제 6조(정사서 및 준사서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영 시행당시 정사서로서 별표 3의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1급정사서로,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2급정사서로 보며, 이 영 시행당시 준사서는 이 영에 의한 준사서로 본다.</p> <p>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(삭제)</p> |
| | <p>제 7조(국·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한 경과조치) 국·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제30조제 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제 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96조제 3호중 “도서관법”을 “도서관진흥법”으로 한다.</p> <p>②저작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3조제 1호중 “도서관법”을 “도서관진흥법”으로 한다.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| | |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[별표 1]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(제 3조 관련) 1. 공공도서관 | | | | | [별표 1]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(제 3조 관련) 1. 공공도서관 | | | | | |
| 봉사대상 기준인구 | 시 설 | | 자 료 | | | 봉사대상 기준인구 (인) | 시 설 | | 자 료 | |
| | 건 물 (제곱미터) | 열 램 석 (좌석수) | 기본장서 (권) | 연간증가 (권) | | | 건 물 (제곱미터) | 열 램 석 (좌석수) | 기본장서 (권) | 연간증가 (권) |
| 2만미만 | 264이상 | 60이상 | 3,000이상 | 300이상 | | 2만미만 | 264이상 | 60이상 | 3,000이상 | 300이상 |
| 2만이상 5만미만 | 660이상 | 150이상 | 6,000이상 | 600이상 | | 2만이상 5만미만 | 660이상 | 150이상 | 6,000이상 | 600이상 |
| 5만이상 10만미만 | 990이상 | 200이상 | 15,000이상 | 1,500이상 | | 5만이상 10만미만 | 990이상 | 200이상 | 15,000이상 | 1,500이상 |
| 10만이상 30만미만 | 1,650이상 | 350이상 | 30,000이상 | 3,000이상 | | 10만이상 30만미만 | 1,650이상 | 350이상 | 30,000이상 | 3,000이상 |
| 30만이상 50만미만 | 3,300이상 | 800이상 | 90,000이상 | 9,000이상 | | 30만이상 50만미만 | 3,300이상 | 800이상 | 90,000이상 | 9,000이상 |
| 50만이상 | 4,950이상 | 1,200이상 | 150,000이상 | 15,000이상 | | 50만이상 | 4,950이상 | 1,200이상 | 150,000이상 | 15,000이상 |
| 비고 : 가. 기준인구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 (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) · 구 · 읍 · 면 의 인구를 말한다. | | | | | 비고 : 가. 봉사대상기준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 해 시(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) · 구 · 읍 · 면의 인구를 말한다. | | | | | |
| 나.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 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·연속간행 물실·시청각실·회의실·사무실 및 자료비치 시설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| | | | | 나.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 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·연속간행물 실·시청각실·회의실·사무실 및 자료비치시 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| | | | | |
| 다.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 퍼센트이상으로 한다. | | | | | 다.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 퍼센트이상으로 한다. | | | | | |
| 라. 노인 및 신체장애자를 위하여는 전체 열람 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 | | | | | 라.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 | | | | | |
| 마.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, 시청각자료를 봉사대 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, 기타 향 토자료·전산화자료·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. | | | | | 마.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, 시청각자료를 봉사대 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, 기타 향토자 료·전산화자료·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. | | | | | |
| 바.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봉사대상기준인 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에 서 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. | | | | | 바.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 인구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,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. | | | | |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|---|--|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|--|--|--|---|------|-----|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-|--|
| <p><u>2. 대학도서관</u> <u>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,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재·전산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| (삭제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<u>3. 학교도서관</u> <u>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·설비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, 교수·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·컴퓨터 교육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| (삭제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<u>4. 전문도서관(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| <p><u>2. 전문도서관(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봉사대상</th><th>시 설 및 자 료 기 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 중</td><td>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,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(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이어야 한다.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봉사대상 | 시 설 및 자 료 기 준 | 공 중 |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,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(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이어야 한다.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봉사대상</th><th>시 설 및 자 료 기 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 중</td><td>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,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(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이어야 한다.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봉사대상 | 시 설 및 자 료 기 준 | 공 중 |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,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(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이어야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봉사대상 | 시 설 및 자 료 기 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 중 |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,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(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이어야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봉사대상 | 시 설 및 자 료 기 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 중 |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,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(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이어야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<u>5. 특수도서관(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| <p><u>3. 특수도서관(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봉사대상</th><th colspan="2">시 설</th><th>자 료</th></tr> <tr> <th>건 물</th><th>기계·기구</th><th>장 서</th><th>녹음테이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 각 장 애자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: 6 6 제 상 ·면적 : 6 6 제 상 ·서고 : 25 면 적 의 25 페 센 트 이 상 ·인 쇄 실 : 면 적 의 35 페 센 트 이 상 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자체판기 2대이 상 2. 접자인쇄기 1대이 상 3. 접자타자기 3대이 상 4. 녹음기 4대이상, 다만, 전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접자체판기 1천 권을 증가하야 한다. 1대·접자 인쇄기 1 대·접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 여야 한다. 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천 500 권이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이 33제 곱 미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봉사대상 | 시 설 | | 자 료 | 건 물 | 기계·기구 | 장 서 | 녹음테이프 | 시 각 장 애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: 6 6 제 상 ·면적 : 6 6 제 상 ·서고 : 25 면 적 의 25 페 센 트 이 상 ·인 쇄 실 : 면 적 의 35 페 센 트 이 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자체판기 2대이 상 2. 접자인쇄기 1대이 상 3. 접자타자기 3대이 상 4. 녹음기 4대이상, 다만, 전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접자체판기 1천 권을 증가하야 한다. 1대·접자 인쇄기 1 대·접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 여야 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천 500 권이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이 33제 곱 미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봉사대상</th><th colspan="2">시 설</th><th>자 료</th></tr> <tr> <th>건 물</th><th>기계·기구</th><th>장 서</th><th>녹음테이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 각 장 애자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: 6 6 제 상 ·면적 : 6 6 제 상 ·서고 : 25 면 적 의 25 페 센 트 이 상 ·인 쇄 실 : 면 적 의 35 페 센 트 이 상 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자체판기 2대이 상 2. 접자인쇄기 1대이 상 3. 접자타자기 3대이 상 4. 녹음기 4대이상, 다만, 전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접자체판기 1천 권을 증가하야 한다. 1대·접자 인쇄기 1 대·접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 여야 한다. 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이 33제 곱 미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봉사대상 | 시 설 | | 자 료 | 건 물 | 기계·기구 | 장 서 | 녹음테이프 | 시 각 장 애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: 6 6 제 상 ·면적 : 6 6 제 상 ·서고 : 25 면 적 의 25 페 센 트 이 상 ·인 쇄 실 : 면 적 의 35 페 센 트 이 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자체판기 2대이 상 2. 접자인쇄기 1대이 상 3. 접자타자기 3대이 상 4. 녹음기 4대이상, 다만, 전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접자체판기 1천 권을 증가하야 한다. 1대·접자 인쇄기 1 대·접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 여야 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이 33제 곱 미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
| 봉사대상 | | 시 설 | | 자 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건 물 | 기계·기구 | 장 서 | 녹음테이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시 각 장 애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: 6 6 제 상 ·면적 : 6 6 제 상 ·서고 : 25 면 적 의 25 페 센 트 이 상 ·인 쇄 실 : 면 적 의 35 페 센 트 이 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자체판기 2대이 상 2. 접자인쇄기 1대이 상 3. 접자타자기 3대이 상 4. 녹음기 4대이상, 다만, 전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접자체판기 1천 권을 증가하야 한다. 1대·접자 인쇄기 1 대·접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 여야 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천 500 권이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이 33제 곱 미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봉사대상 | 시 설 | | 자 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건 물 | 기계·기구 | 장 서 | 녹음테이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시 각 장 애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: 6 6 제 상 ·면적 : 6 6 제 상 ·서고 : 25 면 적 의 25 페 센 트 이 상 ·인 쇄 실 : 면 적 의 35 페 센 트 이 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자체판기 2대이 상 2. 접자인쇄기 1대이 상 3. 접자타자기 3대이 상 4. 녹음기 4대이상, 다만, 전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접자체판기 1천 권을 증가하야 한다. 1대·접자 인쇄기 1 대·접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 여야 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이 33제 곱 미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1천 500 권이 터 증가 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500점이상. 다만, 전물면적이 33제곱미 터 증가할 때마다 200 만, 건 점을 추가하여야 한 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고 : 가.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일 때는 녹음 실·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면 | 비고 : 가.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일 때에는 녹음 실, 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 |
|--|---|--|--|
| 적의 10페센트이상이어야 한다. 나. 건물면적에는 현관·휴게실·복도·화장실 및 식당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| | 면적의 10페센트이상이어야 한다. 나. 건물 면적에는 현관·휴게실·복도·화장실 및 식당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| |
| 구 분 | 배 치 기 준 | 구 분 | 배 치 기 준 |
| 공공도서관 |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,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,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. | 공공도서관 |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,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,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. |
| 대학도서관 |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, 그 학생수가 1천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. | | (삭제) |
| 학교도서관 | 1. <u>국민학교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·겸임사서교사(사서교사 자체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실기교사(사서)중 1인을 두며, 36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(사서) 각 1인을 둔다.</u> 2. <u>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(사서) 각 1인을 두며, 24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(사서)각 1인을 둔다.</u> | | (삭제)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
|---|--|
| <p>전문도서관 또는 특수 도서관</p> <p>1.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 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.</p> <p>2.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 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둔 다.</p> | <p>전문도서관 또는특수 도서관</p> <p>1.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 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.</p> <p>2.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 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둔 다.</p> |

〔별표 3〕

사서직원의 자격요건(제 5조관련)

| 자 격 | 자 격 요 건 | 자 격 | 자 격 요 건 |
|-------|--|-----------|---|
| 1급정사서 | <p>1.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를 받은 사람</p> <p>2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 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 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 은 사람</p> <p>3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 관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 학에 관한 연구경력(이하 “도서관등 근무경력”이라 한다)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4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 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 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(이하 “지정교육기관”이라 한다) 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(이하 “소정의 교육과정”이라 한 다)을 이수한 사람</p> | 1급 정사서 | <p>1.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 를 받은 사람</p> <p>2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 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 박사학 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</p> <p>3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 관근무경력 기타 문화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 학에 관한 연구경력(이하 “도서관등 근무경력”이라 한다)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4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 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 으로서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(이하 “지정교육기관”이라 한 다)에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(이하 “소정의 교육과정”이 라 한다)을 이수한 사람</p> |
| 2급정사서 | <p>1. 대학(교육대학·사범대학·방송통신대 학·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도서관 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 람</p> <p>2.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를 받은 사람</p> | 2급 정사서 | <p>1. 대학(교육대학·사범대학·방송통신대 학·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문헌 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</p> <p>2.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 를 받은 사람</p> |

| 圖書館法施行令 | | 圖書館振興法施行令 | |
|---------|--|---|---|
| (신설) | <p>3. 도서관학 또는 문현정보학외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4.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5.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6.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| <p>3.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4.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5.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6.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7.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| <p>준사서</p> <p>1.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</p> <p>2. 전문대학(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3.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현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</p> |
| 준사서 | <p>비고 :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·자료가 1천500권(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)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.</p> | <p>비고 :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·자료가 1천500권(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)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.</p> | |